

『구미시간이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인 「수도법」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여 소규모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
 - 현행 : 「구미시간이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」
 - 개정 : 「구미시 마을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」
- 「수도법」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 반영(안 제2조)
 - 현행 : 간이상수도 → 개정 : 마을상수도
- 「수도법」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마을상수도 폐지 허가자를 변경(안 제11조)
 - 현행 : 도지사 → 개정 : 구미시장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수도법」, 「상수원관리규칙」
「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간이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 -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변경, 용어 정비, 마을상수도 폐지허가자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